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 3186)

2025. 12. 18.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186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이종환 의원 외 30인
- 나. 제안일자 : 2025. 10. 20.
- 다. 회부일자 : 2025. 10. 23.

2.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도록 확대됨(이전 1%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1%)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100분 1 이상에서 100분의 1.1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4. 8. 7.]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4-140호, 2024. 7. 17., 일부개정.]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24.2.6.개정, 8.7.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목표액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제시할 의무를 가지게 됨.
- 본 개정안은 해당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제 2024-140호, 2024. 7. 17., 일부개정)된 우선구매 목표비율(1.1%)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음.

〈표〉 관련 신·구조문대비표¹⁾

현 행	개 정 안
<u>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u> <u>심사기준</u> <u><신 설></u>	<u>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u> <u>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u> <u>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u> <u>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u> <u>1로 한다.</u>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40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부칙 제2조(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돋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 동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공공기관²⁾이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24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814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있으며, 생산품의 종류는 약 200여개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5년 4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25년 공공기관 전체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을 의미함.

총 구매계획은 71조 1,460억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5년 우선구매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 원 증가한 9,582억원, 우선구매 비율 1.35%임.

- 동 계획을 통해 발표된 서울시의 ‘24년도 중증장애인생산 품 구매금액은 98억 5천9백만원으로 전체 구매금액의 0.95%이며 17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1) 구매목표비율 상향 (안 제6조제3항)

- 동 조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 품 구매목표비율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1로 상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 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 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 품 구매목표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라 100분의 1.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현 행	개 정 안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구매목표의 제품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 또한, 행정규칙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024-140호)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이에 근거하여 고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의 구매목표 비율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이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1%에서 1.1%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의의가 있음.

(2) 수의계약 근거규정 수정 (안 제5조제3항)

- 또한, 동 조례개정안은 '24년 2월 개정된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상위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24년 2월 시행된 개정법률안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종전의 제4항이 제5항으로 수정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 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 ② (생 략) 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u>법 제7조제4항</u> 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법 제7조제5항</u> ----- ----- -----.

다. 집행부서 의견 : 원안동의

- 집행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상위법 개정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종합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관련 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단순한 구매 비율의 수치 상향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의 성격임.
-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재확인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인식개선,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도미화	02-2180-8147